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7 일
양 도 인	① 상 호 (명 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양 수 인	⑤ 상호(명칭)			
	⑥ 성명(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전화번호:)		
⑨ 양도·양수하려는 터미널의 명칭				
⑩ 위치				
⑪ 양도가격				
⑫ 양도·양수 예정시기				
⑬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양도·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3,000원

(뒤 쪽)

※ 첨부서류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1부
3.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